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1] [국토해양부령 제527호, 2012.10.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4 - 201 - 359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2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3조(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전문개정 2012.2.23]

제4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8>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2.23]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8>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든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 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적산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6.8>

③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적산유량계의 이용량을 매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6.8>

[전문개정 2012.2.23]

[제목개정 2012.6.8]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원상복구계획서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6조의2(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이란 별표 1의 안내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2.6.8>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의3제3항과 영 제12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③ 삭제 <2008.6.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명의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6항 단서의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표준도를 말한다.

⑥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8조의2(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통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9조(준공신고) ① 삭제 <1999.5.14>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신설 2012.6.8>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2.23, 2012.6.8>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이 제출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3, 2012.6.8>

⑥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3, 2012.6.8>

[제목개정 1999.5.14]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 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및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최초의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②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에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 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한다.
1.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개정 2012.2.23]

- 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2.23]

- 제9조의8(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2.6.8]

- 제9조의9(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2.6.8]

제10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완료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또는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11조 삭제 <1999.5.14>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요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변경지정)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13조(지적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고시는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3]

제1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3]

제1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이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1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허가내용·허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1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마.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은행이나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 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제17조에 따라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목이 변경된 경우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3]

제1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19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2.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23]

제20조(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① 삭제 <1999.5.1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③ 제2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제목개정 1999.5.14]

제20조의2 삭제 <2012.6.8>

제21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보고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3]

제22조(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23조 삭제 <2002.1.4>

제24조(출입·조사공무원증)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3]

제2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이라 한다)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3>

④ 삭제 <2005.12.21>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

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개정 2012.2.23>

제26조 삭제 <1999.5.14>

제2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23]

제28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를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28조의2(지도·감독 등)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3]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④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3>

⑤ 삭제 <2005.12.21>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2.2.23>

⑦ 제4항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제목개정 1999.5.14]

제30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30조의2 삭제 <2012.2.23>

제30조의3 삭제 <2012.2.23>

제30조의4 삭제 <2012.2.23>

제30조의5 삭제 <2012.2.23>

제30조의6 삭제 <2012.2.23>

제30조의7 삭제 <2012.2.23>

제30조의8 삭제 <2012.2.23>**제30조의9 삭제 <2012.2.23>**

제31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되,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32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3]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8>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
 -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
 -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7.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등록
 -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영(零)을 곱하여 그 수수료를 산정한다.<신설 2012.10.31>

[전문개정 2012.2.23]

제34조(보고·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공무원은 해당 조사를 받을 자가 갖추어 둔 별지 제45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조사 일시·조사 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3]

제35조(교육 등)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3]

부칙 <제527호,2012.10.3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